

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1994년 3월 15일

총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년 3월 7일 남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 일자 : 1994년 3월 7일 회부(의안번호 제81호)
- 다. 상정 일자 : 제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
(1994년 3월 15일) 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허병태)

가. 제안 이유

- 공적 심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공적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므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
-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덜어 주므로써 공정한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 골자

- 포상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 후보자를 포상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표창 심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
-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(공적심사위원은 7인으로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)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무상)

- 93.12.27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종전에는 전부 공무원이었으나 개정된 공무원법에는 공무원, 법관, 검사, 변호사, 법률학 또는 행정학 부교수급 이상, 초, 중, 고등학교장, 공무원 경력 20년이상의 퇴직 자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었고,
-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, 승진등만 기능을 부여함.
(지금까지는 공적 심사 기능도 포함되었음)
- 따라서 공직에 관한 경험이 없는 민간인이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며 공적 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만 전담도록 함으로써 그 고유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함(공정성과 능률성 확보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임)

4. 질의, 답변 요지

질의자	답변자	질의요지	답변요지
박수용 위원	허병태 총무과장	○ 공무원이 아니면 공적 심사 위원이 될 수 없는지?	○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2명을 위촉할 수 있으나 공적 심사위원회는 과장급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(7인 이하)
		○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을 공적심사위원으로 인선될 수 있는지?	○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.
이태희 간사	"	○ 공적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삭제를 하면 어떤가?	○ 서면 심사보다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자 노력하고 있다. ○ 그러나 복잡한 행정 업무 수행을 하다보면 서면 심의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. (예, 선별추천이 아닌 지명 추천의 경우 등)

5. 토론 요지 : 없 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